물질안전보건자료

1. 화학제품과 회사에 관한 정보

가. 제품명 KF-96-3,000CS

나. 제품의 권고용도와 사용상의 제한

제품의 권고 용도 오일、변성오일
수지개질제 ,
소포제 ,
광택제 ,
분체처리제 ,
발수처리제 ,
섬유처리제 ,
열매유 ,
이형제 ,
절삭유 ,
윤활유 ,
작동유 ,
댐퍼유 ,
화장품용 ,
도료첨가제

사용상의 제한 산업용으로만 사용

다. 제조자/수입자/유통업자 정보

회사명 신에츠화학공업주식회사
주소 일본 군마현 안나가시 이소베2가 13-1(우379-0195)
담당부문 군마 사업소 품질 보증부
전화번호 +81(0)27-385-2172
FAX번호 +81(0)27-385-2753
공급자
회사명 한국신에츠실리콘㈜
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317-23 GT타워 15층
담당부문 업무부
전화번호 +82(0)2-590-2500
FAX번호 +82(0)2-590-2501
응급상황 +82(0)2-590-2500
이메일 msds@shinetsu.net

2. 유해 위험성

가. 유해 위험성 분류

물리적위험성 분류되지 않음.
건강유해성 분류되지 않음.
환경유해성 분류되지 않음.

나. 예방조치문구를 포함한 경고 표지 항목

o 그림문자 없음.
o 신호어 없음.
o 유해 위험 문구 없음.
o 예방조치문구 없음.

다. 유해 위험성 분류기준에 포함되지 않는 기타 유해 위험성 자료없음

3.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화학물질명	관용명 및 이명	CAS 번호	식별번호	함유량(%)
Dimethylpolysiloxane		63148-62-9	KE-31068	100

4. 응급조치요령

가. 눈에 들어갔을 때 즉시 최소 15분동안 충분히 씻어내십시오. 자극이 발생하거나 지속될 경우 의사의 진료를 받을 것.

나. 피부에 접촉했을 때 비누와 물로 접촉 부위를 세척할 것.

다. 흡입했을 때 이 물질은 의도된 정상적인 사용 상황에서 흡입 위험물로 예상되지 않음.

라. 먹었을 때 입을 씻어내시오. 즉시 의사의 진료를 받을 것.

마. 기타 의사의 주의사항 증상에 따라 처치함.

5. 폭발·화재시 대처방법

가. 적절한 (및 부적절한) 소화제

적절한 소화제 물 안개. 포말. 분말소화약제. 이산화탄소(CO2).

부적절한 소화제 불길이 번질 위험이 있으므로 강력한 물줄기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나. 화학물질로부터 생기는 특정 유해성 (예: 연소시 발생 유해물질) 열을 받거나 화재 발생시, 유해 가스를 형성할 수 있음.

다. 화재 진압 시 착용할 보호구 및 예방조치 자료없음

6. 누출사고시 대처방법

가. 인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 사항 및 보호구 적합한 개인 보호장비를 착용할 것.

나.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사항 안전하다면, 더 이상의 누출이나 유출이 없도록 하십시오. 하수도, 수로 또는 지하로 방출하지 말 것.

다. 정화 또는 제거방법 점화원을 제거할 것.

대량 누출: 위험없이 할 수 있는 경우 누출물을 막을 것. 가능한 경우 누출된 물질 주위로 도랑을 팔 것. 퍼지지 않게 플라스틱 커버로 덮으십시오. 질석 모래 혹은 흙 등 불연성 재료를 이용하여 제품을 흡수시킨 후 후속처리를 위하여 용기에 담을 것.

소량 누출: 흡착재 (천, 플리스)로 닦아내십시오. 잔여 오염이 완전히 제거되게 하기 위해 표면을 세척하시오.

절대로 엎질러 진 것을 다시 사용하려고 본래 용기에 넣지 말 것.

7. 취급 및 저장방법

가. 안전취급요령 취급/보관 시에 주의하십시오.

나. 안전한 저장 방법 (피해야 할 조건을 포함함) 용기를 단단히 밀폐하시오. 직사광선을 피한 차고 건조한 곳에 저장함. 원래 용기에 담아서 보관할 것.

8. 노출방지 및 개인보호구

가. 화학물질의 노출기준, 생물학적 노출기준 등

구성 성분에 대한 노출 기준이 명시되지 않음.

나. 적절한 공학적 관리 세안장치 시설을 제공할 것.

다. 개인 보호구

o 호흡기보호 대개 개인 호흡 보호 장비는 필요하지 않음.

o 눈보호 측면 보호면을 갖춘 보안경(또는 고글)을 착용할 것.

o 손보호 보호장갑을 착용하시오.

o 신체보호 특별 보호 장구가 필요하지 않음.

위생대책 휴식 시간 전이나 본 제품을 취급한 다음에는 즉시 손을 씻으십시오. 우수한 산업위생 및 안전에 관한 기준에 따라 취급하십시오. 이 제품은 공기중에서 약 150℃(300°F)이상에서 포름알데히드를 생성할수있음.포름알데히드는 피부와 호흡기에 민감하고, 눈과 식도 자극성이고, 급성독성과 잠재적 암 위험이있음. 그래서 공기중에서 약 150℃(300°F)이상으로 가열할 때는 적절한 환기장치를 사용하고 장갑,보안경,유기증기호흡기 또는 보호의를 착용하시오.

9. 물리화학적 특성

가. 외관

형태 액체.

색 무색. 투명한.

나. 냄새 무취

다. 냄새 역치 자료없음

라. pH 자료없음

마. 녹는 점/어는 점

녹는점 적용되지 않음

바. 초기 끓는점과 끓는 점 범위 적용되지 않음

사. 인화점 > 300 °C (> 572 °F) 개방식
> 94 °C (> 201.2 °F) 밀폐식 시험 방법

아. 증발속도 사소한 (부틸 아세테이트=1)

자. 인화성(고체, 기체) 자료없음

차. 인화 또는 폭발 범위의 상한/하한

인화 또는 폭발 범위의 상한 자료없음

인화 또는 폭발 범위의 하한 자료없음

카. 증기압 무시할수있음(25℃)

타.용해도(물) 불용성 (<1 ppm)

파. 증기밀도 적용되지 않음

하. 비중 0.97 (25℃)

거. n-옥탄올/물 분배계수 자료없음

너. 자연발화온도 약400°C (752°F)

더. 분해온도 자료없음

러. 점도 3000 mm2/s (25℃)

머. 분자량 자료없음

다른 정보

연소열 (NFPA 30B) 0 kJ/g

휘발도 < 0.3

10. 안정성 및 반응성

가. 화학적 안정성 및 유해 반응의 가능성

화학적 안정성 정상 상태에서는 안정함.

유해 반응의 가능성 위험한 중합반응이 발생하지 않음.

나. 피해야할 조건 (정전기 방전, 충격, 진동 등) 자료없음

다. 피해야 할 물질 강산화제.

라. 분해시 생성되는 유해물질 가열 또는 연소에 의해 분해생성물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이산화탄소와 불완전 연소에 따라 미량의 탄소화합물을 생성함: 이산화규소 포름알데히드

11. 독성에 관한 정보

가. 가능성이 높은 노출 경로에 관한 정보

o 호흡기 자료없음

o 경구 자료없음

o 눈 자료없음

o 피부 자료없음

나. 건강 유해성 정보

o 급성 독성 (노출가능한 모든 경로에 대해 기재)

제품	시험 결과
Dimethylpolysiloxane (63148-62-9)	급성 경구 LD50 쥐: > 5 g/kg (Estimated by similar product)

o 피부 부식성 또는 자극성 피부-토끼:무자극 (유사품에 의한 추정)

o 심한 눈 손상 또는 자극성 눈-토끼 : 눈 자극 없음 (유사품에 의한 추정)

o 호흡기 과민성 자료없음

o 피부 과민성 자료없음

o 발암성 발암성없음(유사품에 의한 추정)

o 생식세포 변이원성 음성(박테리아) (유사품에 의한 추정)

o 생식 독성 자료없음

o 표적장기 전신독성 물질(1회 노출) 자료없음

o 표적장기 전신독성 독성(반복 노출) 자료없음

• 흡인 유해성 자료없음

다. 기타 정보 이 제품은 대략 150도C(300도F)이상의 공기존재하에 포름알데하이드를 생성할수있음.포름알데하이드는 피부,호흡기,눈과 목에 자극을일으키고 급성독성,잠재발암성의 위험이있음.그래서 이 제품이 대략 150도C(300도F)이상으로대기중에서가열될때는 적절한 환기장치 또는 장갑,보안경,유기증기호흡기 또는 보호의 등의 보호장구를 착용한다.

12. 환경에 미치는 영향

가. 생태독성 자료없음.

수생환경 유해성, 급성 유해성 자료없음

수생환경 유해성, 만성 유해성 자료없음

나. 잔류성 및 분해성 건조한 토양에서 분해를 일으킬 수 있음.(유사품에 의한 추정)

다. 생물 농축성 생물농축성없음(유사품에 의한 추정)

라. 토양 이동성 자료없음

마. 기타 유해 영향 자료없음

13. 폐기시 주의사항

가. 폐기방법 소각처리. 소각시 실리카분말이 생성하므로 적절한 설비에서 소각하시오.또 필요한방진마스크등의 보호구를 착용하시오. 현지/지역/나라/국제법규에 따라 내용물/용기를 처리함.

나. 폐기시 주의사항 (오염된 용기 및 포장의 폐기 방법을 포함함) 자료없음

14. 운송에 필요한 정보

IATA

위험물로 규제되지 않음.

IMDG

위험물로 규제되지 않음.

15. 법적 규제현황

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규제

관리대상유해물질

규제되지 않음.

제조등의 금지유해물질

규제되지 않음.

제조 또는 사용 허가대상 유해물질

규제되지 않음.

특수건강진단 대상유해인자

규제되지 않음.

작업환경측정대상 유해인자

규제되지 않음.

나.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규제

사고대비물질

규제되지 않음.

취급금지물질

규제되지 않음.

관찰물질

규제되지 않음.

취급제한물질

규제되지 않음.

유독물

규제되지 않음.

다.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한 규제

소방법 지정 가연성 물질 (가연성 액체)

라.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규제

지정폐기물의 분류번호

규제되지 않음.

폐유기용제중 할로겐족에 해당되는 물질

규제되지 않음.

지정폐기물에 함유된 유해물질

규제되지 않음

마. 기타 국내 및 외국법에 의한 규제

대기환경보전법

대기오염물질

규제되지 않음.

특정대기유해물질

규제되지 않음.

목록현황

국가 혹은 지역	목록명	목록해당 (예/아니오)
한국	한국 기존화학물질 목록 (ECL)	예

*'예'는 본 제품의 모든 구성 요소가 정부에 의해 규제되는 재고 관리 요구 사항을 준수함을 나타냅니다

추가 정보 이 물질 안전 보건 자료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에 의거하여 작성된 것입니다.

16. 기타 참고사항

가. 자료의 출처 ACGIH
EPA: 데이터베이스 확보
NLM: 유해화학물질 데이타베이스 US. IARC 화학물질인자의 노출기준 모노그래프 대한민국. 사고대비물질 (대통령령 제19203호 유해화학물질관리법시행령) 위험물지정수량 (대통령령 제18406호 위험물안전관리법시행령 별표 1)
대한민국. 제조등의 금지유해물질 (대통령령 제13053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9조)
대한민국. 제조 또는 사용 허가대상 유해물질 (대통령령 제13053호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30조) 대한민국. 유독물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화학물질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 1997-10 개정) 대한민국. 관찰 대상 화학물질 (TCCL 장관 명령 제 6조)
대한민국. 화학물질 및 물리적인자의 노출기준 (노동부고시 제1986-45 개정) 대한민국. 취급금지물질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 11조) 대한민국. 휘발성유기화합물 (환경부고시 제2001-36, 2001년 3월8일 개정) 대한민국. 취급제한물질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 11조)
대한민국. 유해 화학물질 관리법 (TCCL), 기존화학물질목록 (KECI)
유해화학물질관리법, 기존화학물질목록 1997년이전목록
대한민국. 유독물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 10조) 대한민국. 화학물질의 배출량조사 및 산정계수에 관한 규정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 14조)

나. 최초 작성일자 2012년 10월 13일

다. 개정 횟수 및 최종 개정일자 2012년 10월 13일 (01 개정)

라. 기타 자료없음

책임의 한계 본 제품은 분무상태로 사용하여 그 입자를 흡입한 경우 흡입독성을 나타낼 가능성이 있으므로 별도의 예방조치가 필요함.배기장치의 설치,호흡용 보호구의 착용등 충분한 대책을 취하시오.상세사항에 대해서는 폐사영업담당에 상담바랍니다.
기재내용은 대표치이고,규격 및 보증치를 표시하는 것이 아닙니다.또한 추천된 산업안전보건조치나 취급방법은 통상의 취급사항에 대해 적용하는 것이 좋다고 사료되는 내용을 기재하고 있는 바 구체적인 용도,취급조건은 추천하는 사항이 적절한지 검토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본 제품은 일반공업용도로 개발,제조 된 제품입니다.의료용 기타 특수용도에 사용하시고자 할 때는 귀사에서 사전TEST하여,해당용도에 사용하는 것의 안전성을 확인하여 사용하십시요.의료용IMPLANT용에는 절대 사용하지 마십시요.

이 자료집은 다음 절의 이전 버전에서 변경된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물리 및 화학적 특성: 다중 특성